

요약문으로 본

독도의 역사 1500년-4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편)

Ⅱ. 독도의 역사 개관-19~20세기

1. 메이지 일본과 독도

1) 1868년,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타도되었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메이지 정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화, 중앙집권화, 부국강병정책 등을 감행했다. 일본은 조선에게 새로운 정권이 일본에서 출범했음을 알렸으나 근대화 정책으로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은 일본을 조선이 서양제국의 앞잡이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황이 일본의 왕으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서계(외교문서)에는 당시의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중국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황’ 이나 ‘칙’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조선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탐색하기 위해 3명의 외무성 관리들을 한반도로 파견했다.

2) 1870년, 조선을 탐색한 외무성 관리 3명이 외무성에 보고서를 올렸다. 그들의 보고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 라는 제목으로 17세기말 두 섬이 조선영토가 된 사실을 적어놓았다.

3) 1875년, 강화도사건으로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되었다.

4) 1876년, 한일 간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5) 1876년 7월,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라는 일반인이 동해에서 마쓰시마(다쥬레=울릉도)를 보았다고 하여 그 섬을 개척하는 것을 외무성에게 건의하면서 「마쓰시마(송도, 松島) 개척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외무성이 죽도(다케시마)와 송도(마쓰시마) 그리고 리앙쿠르 락스(독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무성은 죽도와 송도에 대한 조사를 내무성에 의뢰했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조회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6) 1877년 3월, 내무성은 조사결과를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라는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내무성이 내부적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17세기말 일본영토 외가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섬의 소속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일본의 중앙(태정관)에서 정해야 한다고 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에게 요청문서를 올렸다.

7) 태정관은 내무성의 서류를 심사해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17세기말 조선인이 입도한 후 일본영토 외의 땅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라는 지령서(태정관 지령문)를 내무성에 하달했다. 이 문서는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는 제목으로 하달되었다.

8) 1870년과 1877년, 일본정부는 공문서를 통해 독도가 조선 부속이며 일본영토 외의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이 ‘태정관 지령문’(국립공문서관 소장)을 사실상 열람금지 조치시켰다.

9) 외무성은 울릉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주장했다. 외무성내에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 울릉도방면에 대한 일본인들의 진출을 추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 내에도 ‘마쓰시마’(송도)는 조선의 ‘우산도’(독도)라고 주장하여 울릉도나 독도를 일본이 개척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장도 있었다.

2. 해군성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

1) 일단 울릉도를 현지조사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어 1880년, 일본 해군성이 군함 아마기(天城)를 울릉도로 파견했다. 군함 아마기는 울릉도와 죽서(竹嶼 : 한국명 죽도 : 울릉도 동쪽 2km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의 경위도를 측량했다. 그렇게 하여 아마기는 일본에서 고래로부터 말한 죽도(다케사

마)는 죽서를 기리키는 것으로 본다고 해군성에 보고했고 외무성도 그것을 확인했다.

외무성은 원래 죽도가 울릉도였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다. 결국 해군성의 공식문서에서 울릉도는 송도(마쓰시마)로 기록되었고 죽서가 죽도(다케시마)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독도의 명칭이 서양이름 ‘리앙쿠르 락스’로부터 파생된 ‘량코도’, ‘양코도’ 등이 되어 독도의 일본명칭이 없어지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와 관음도.



2) 1882년 4월, 고종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 울릉도 이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3) 고종이 이규원과의 대화에서 독도의 명칭 ‘우산도’를 폐지했다. 이규원이 우산도란 울릉도의 옛이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명칭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이것으로 인해 독도 명칭이 ‘우산도’였던 시대가 끝났다. 그후 조선에서는 일시적으로 독도를, 일본명칭이었던 송도를 사용해 불렀던 모양이다.

4) 1882년 12월, 고종이 ‘울릉도 개척령’을 발령했다. 이것으로 약 480년간에 걸친 울릉도의 무인도정책이 완료되었고 울릉도 이주정책이 시작되었다.

5) 1883년 3월, 일본 내무성이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일본 전체에 알렸다.

6) 1883년10월, 울릉도에 불법으로 거주해 있던 일본인 254명이 일본으로 강제인양 되었다.

7) 울릉도 이주정책으로 12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울릉도로 정식으로 이주했다. 그들 중에는 불법으로 울릉도에 거주해온 약 4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일본 해군성 ‘수로지’ 속의 독도

1) 1883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환영수로지>를 출간했다. 일본 주변의 해로를 정확히 기재하여 선박 운항에 도움이 되도록 출간한 것이다. 수로부는 <수로지> 속에 1880년의 군함 아마기의 조사대로 울릉도를 ‘송도(마쓰시마)’로 기재했다.

2) 그리고 독도를 ‘리얀코르토 열암(列岩)’ (=리앙쿠르 락스)으로 기재하여 ‘조선 동해안’에 속하는 섬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독도의 발견을 ‘1849년 프랑스 리앙쿠르호’에 의한 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독도가 17세기 이후 계속 송도라고 불렀던 역사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즉 <수로지>는 원래 일본에선 울릉도가 죽도(다케시마), 독도가 송도(마쓰시마)로 불려온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두 섬의 역사와 원래의 명칭을 망각해 무시해 버렸다. 이후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모든 <수로지>는 이런 식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3) 1894년, 일본 수로부는 『조선수로지』 제1판을 발행했다. 기재내용은 『환영수로지』와 차이가 없었다. 같은 해 청일전쟁이 일어나 1895년 일본은 청나라를 이겨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얻었다. 이것으로 일본의 강병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4) 1897년, 일본 수로부는 『일본수로지』를 발행했다. 독도는 『일본수로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일본수로지』에 삽입된 해도에도 독도는 그려지지 않았다.

5) 1899년, 일본 수로부는 『조선수로지』 제2판을 발행했다. 독도는 제1판과 똑같이 ‘조선 동해안’에 기재되었다.

6) 1907년3월, 『조선수로지』가 다시 발행되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이후였으나 독도는 아직 『조선수로지』에 기재되었다.

7) 1907년6월, 『일본수로지』가 발행되었다. 독도는 이 『일본수로지』 4권 제3편 ‘본주 및 북서안’에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었고, 독도가 ‘메이지 38년(1905)에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되었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8) 이렇게 하여 해군성 수로부는 먼저 독도를 <조선수로지>의 ‘조선 동해안’으로 기재하여 조선 수역에 포함되는 섬으로 인정했으나 1905년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후에는 독도를 <일본수로지>에 옮겨서 일본 수역에 포함되는 일본 섬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 울릉도로 이주한 도민 중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다. 해류가 전라도에서 울릉도로 흐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왕래했기 때문이다. 울릉도 도민들은 독도를 돌섬으로 불렀다.

2)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제국’ 건국을 선포했다.

3)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어 세계에 알렸다. ‘칙령 제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중략) 관할구역은 「울릉 전체, 죽도, 석도(石島)」로 한다.’

4) 석도(石島)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한국은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한국 측 주장을 비판한다. 그런데 관음도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었다. 도항(島項), 각새섬 등이 그것이고 관음도를 섬이 아니라 곳으로 본 ‘관음기’라는 이름도 있었다. 석도가 관음도라면 석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많은 이름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었고 관음도

는 원래 울릉도와 거의 붙어있는 암초이므로 독립된 섬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석도가 관음도일 수 없고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 명칭이었다.

勅令

勅令第四十號

外國語學校及醫學校及中學校卒業人을該學校에
官制

第一條 外國語學校及醫學校及中學校에卒業人은
官을叙任在案하였다가該校敎官이有闕하여填補하
卒業生敎官叙任人으로서特別試驗을經하여填任하
第二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하이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
勅令第四十一號

第一條 鬱陵島를鬱島로改稱하고島監을郡守로改正하件

郡守로改正하여官制中에編入하고郡等은五等으로하事

第二條 郡廳立眞臺霞洞으로定하고區域은鬱陵全島와竹
島石島를管轄하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廳事項欄內鬱陵
島以下十九字를刪去하고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六字는七字로改正하고安峽郡下
에鬱島郡三字를添入하事

第四條 經費는五等郡으로磨鍊하되現今間인즉吏額이未備
하고庶事草創하기로該島收稅中으로姑先磨鍊하事

第五條 未盡한諸條는本島開拓을隨하여次第磨鍊하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하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1900년 대한제국은 독도를
울도군 관할 하 섬임을 확인.